

# 채권법 8

- 이행지체
- - 이행지체의 요건 : 1) 채무가 이행기에 있을 것, 2)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지체할 것, 3) 채무자의 귀책사유, 4) 위법성

- 1) 이행기 도래 : 제387조 1항 1문
- □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
-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.
- (출처 : 대법원 1988.11.8. 선고 88다3253 판결【대여금】 [공1988.12.15.(837),1532])

- 제387조 1항 1문의 예외: □ 제536조
- 다만, 당사자 쌍방이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고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에는 그 채무는 그 이후 기한의 정함이 없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.
- (출처 :대법원 1980.8.26. 선고 80다1037 판결【소유권이전등기등】공 1980.10.15.(642),13123])

- □ 추심채무
- □ 증권적 채권 (지시채권, 무기명채권)
- □ 정지조건부권리 : 조건 성취 후 최고를 받은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.

- 계약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바로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케 하는 이른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,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부터 이행지체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.
- (출처 : 대법원 1989.9.29. 선고 88다카14663 판결 【보증금】 [공1989.11.15.(860),1574])

- □ 부작위채권
- 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
- 변제기까지는 이자제한법의 제한범위내의 약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하지만 위 변제기 이후에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지 이자가 아니고 또 민법 제163조 제1호가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도 아니다.
- (출처 : 대법원 1989.2.28. 선고 88다카214 판결【가등기말소】 [공1989.4.15.(846),525])

- 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
- \*\*\*소멸시효 기산점
-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

-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진행되지만 그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2.12.22. 선고 92다 40211 판결【공사대금】 [공 1993.2.15.(938),586])

-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비록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,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고 할 것이다.
- (출처 : 대법원 1991.3.22. 선고 90다9797 판결【소유권이전등기】 [공1991,1244])